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학 교 안 전 사 고 예 방 및 보 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서는 시·도 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업무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공제중앙회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별도 사업비를 납부받아 공동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법령상 관련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예방사업비를 법 제49조 제3항에 근거한 공제로로 편성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받아 추진함으로써 시·도 공제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제고하려는 바, 이를 위한 공제회 분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공제회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안 제13조)

- 1) 연간 예방사업비 총액과 연동되는 공제회 분담금 총액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공제회 분담금 및 예방사업 분담금의 합과 유사한 수준(100분의 6 이내)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 있음(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제96조에 따라 기금 총액의 8% 이상을 예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 예방사업을 의무로 규정하나, 학교안전법의 경우 예방사업 투자에 대한 지출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 또한, 현행 규정은 각 공제회가 피공제자 수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 교육청 및 공제회별 예산·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 배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제2항 및 제3항)

나. 공제회 분담금의 용도 구체화(안 제13조의2)

예방사업의 재원이 공제료에 기초한 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제회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법령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공제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각 공제회의 전년도 공제료 수입 총액(이하 “기준 수입 총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6 이내의 금액을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을 위한 분담금 총액으로 정한다.
- ② 공제회별 분담금은 각 공제회별 기준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배분하되, 교육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분담금을 각 교육청 및 공제회에 통보하고, 각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공제회 분담금의 용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제회의 분담금은 공제중앙회의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공제중앙회의 사업
2. 학교안전사고 관련 국가승인통계 작성·관리
3. 학교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u>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 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도의 피공제 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 하여 할당하며, 각 시·도 공제 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 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u>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 부장관은 제22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기준 공제료를 적용하 여 산출된 각 공제회의 전년도 공제료 수입 총액(이하 “기준 수입 총액”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6 이내의 금액 을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을 위한 분담금 총액으로 정한다.</u> <u>② 공제회별 분담금은 각 공제 회별 기준 수입 총액을 고려하 여 배분하되, 교육감과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u> <u>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분담금을 각 교육청 및 공제회 에 통보하고, 각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u> <u>제13조의2(공제회 분담금의 용도)</u> <u>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제회 의 분담금은 공제중앙회의 운영 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u>

다.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따른

공제중앙회의 사업

2. 학교안전사고 관련 국가승인

통계 작성 · 관리

3. 학교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 운영 및 유지 · 관리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662